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신청 관련 주요 질답

허가신청서 제출 시 설립예정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 허가신청서 제출 시 설립예정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관련,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신청요령의 해당 페이지를 적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 신청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신청요령 페이지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발기인(발기에정인 포함)이 기명(서명)날인한 정관(안)(공증받아 제출) ○ 법인설립계획서(공증받아 제출) ○ 대표자 등 임원 및 편성책임자(설립계획서에 이를 명시)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8
	○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구성주주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공증받아 제출) ○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주요주주 중 법인인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공증받아 제출) ○ 주요주주 중 개인인 경우 주요 이력 및 출자 목적을 별도로 기술한 자료,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39~40
	○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방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43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이사회(또는 의사결정기구) 결의서 이외에 주요주주 등의 자금출자능력 증빙 자료(차입약정서, 출자확약서 등 포함) ○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납부확인서(재산세) 등 소득증빙서류	64
⑥ 재정적 능력	○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서, 최근 3년간 납세실적증명서 등 ○ 주요주주의 최근 4년간 합병(분할) 법인의 경우 합병(분할) 및 피합병(분할신설)회사 실적 관련 증빙자료 ○ 주요주주의 1년 이내의 신용등급 증빙자료	65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신청할 경우 법인 설립 완료 시기는?

- 방통위는 설립예정법인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자본금 납입 (또는 출자·출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경우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 조속한 법인 설립 및 개국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시기는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 의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기존 사례 >

- '10년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시 관련 내용을 위원회 의결 주문*에 포함
- *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사업자 단위 기준인지 채널 기준인지?

-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사업자 기준입니다.
- 따라서 이미 시청자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 기존법인의 경우 별도로 시청자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라디오 청취자 권익 실현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의 검증을 요하는 자료는 반드시 회계법인의 검증이 필요한지?

- 허가 신청요령에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